



# 시 보



제1523호 2021. 11. 3.(수)

## 공 고

- 목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21-1757호

## 입 법 예 고

『목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3.

## 목 포 시 장

### 1. 제정이유

- 「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한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2조)
- 문화도시센터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문화도시센터 기능 및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5조)
- 문화도시센터 지원 및 재정·회계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제7조)
- 문화도시센터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### 3. 관련법규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15조
- 「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제15조 및 제17조

### 4. 제정 규칙안 : 불입

### 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# 6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

### 7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11. 3. ~ 2021. 11. 24.(21일간)

### 8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1. 24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 시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#### 나.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: 목포시청 문화예술과(목포시 양율로 203, 58613)

- ☎ 061-270-8429 / Fax 061-270-3577 / 이메일 2435683@korea.kr

### 9. 기 타

-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조 례 명 : 목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규칙 제 호

**목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(안)**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15조 및 제 17조에서 위임한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 라 한다)은 목포 문화도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인력구성)** 센터에는 센터의 장(이하 ‘센터장’ 이라 한다)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센터의 기능)**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문화도시 조성 및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
2.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·홍보·운영 및 인력관리 등
3.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
4.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제5조(센터직원의 복무)**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및 「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」을 준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원)**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 재정 및 회계)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「목포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도·감독 결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